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0차 회의 회의록

1. 일 시: 2020. 12. 10.(목) 14:00~15:20

2. 장 소: 온라인 화상회의 진행

3. 출석인원: 별지 기재와 같음

4. 내 용: 별지 기재와 같음

의 장 _____

간 사 _____



사법행정사무회의 제10차 회의 회의록

2020. 12. 10.

운영지원단

I. 개요

- 일시: 2020. 12. 10.(목) 14:00~15:20
- 방식: 온라인 화상회의 진행
- 참석자
 - 대법원장(의장)
 - 김순석, 김진석, 오승이, 윤준, 이미경, 이찬희, 최한돈, 허부열(이상 위원, 가나다 순)
 - 이창열(간사), 고원혁(서기)
- 분과위원회 및 운영지원단 등
 - 이재권(재정·시설 분과위원회)
 - 최수환, 홍동기(이상 운영지원단장), 박노수, 김도현, 양석용, 유제민, 이재선(이상 운영지원단원)
 - 김정환(인사운영심의관)

II. 의사개요

1. 대법원장(의장) 인사말씀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함. 지난 회의에서 다음 회의 때는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자는 바람을 나누었는데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어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온라인 기술을 통해 이렇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함
 - 오늘 회의는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 선정, 2020년 법원시설관리 세출예산 포괄배정액 집행결과, 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관련 입법추진 결과 보고,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및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연구·검토 진



행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 법관 직무성과금 지급기준 검토 계획, 법원공무원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및 절차 안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음

- 가능하면 구두 진행 내용을 줄이기 위하여 미리 서면 자료를 드렸는데, 의문점이거나 의견이 있으면 관련 안건 진행 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2.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 선정(소관: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가. 기초보고

■ 이재권 분과위원장 기초발제

-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법원청사 신·증축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를 논의의 쟁점으로 제시함

나. 토론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다들 아시다시피 창원가정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신설 관련 법률안이 통과된 점을 반영하여 중기사업계획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가 약간 수정되었음
-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한 안처럼 신축 사업의 경우 2022년 춘천지법, 성남지원, 충주지원, 의성지원, 2023년 제천지원, 논산지원, 경주지원, 마산지원, 2024년 장흥지원, 해남지원, 2025년 영월지원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증축 사업의 경우 2022년 부산동부지원, 밀양지원의 순서로 정해도 괜찮은지?

■ 위원들은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한 안에 모두 동의하였음

다. 결정사항

■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 선정(재정·시설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를, ①신축 사업의 경우 2022년 춘천지법, 성남지원, 충주지원, 의성지원, 2023년 제천지원, 논산지원, 경주지원, 마산지원, 2024년 장흥지원, 해남지원, 2025년 영월지원의 순서로, ②증



축 사업의 경우 2022년 부산동부지원, 밀양지원의 순서로 각 정함이 타당함

3. 2020년 법원시설관리 세출예산 포괄배정액 집행결과(소관: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가. 기초보고

- 2020년 법원시설관리 세출예산 포괄배정액 집행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함

나. 논의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5차 회의에서 법원시설관리 세출예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에 따라 올해 세출예산 포괄배정액에 대한 집행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임
 - 이에 따르면 기존과 다르게 올해 포괄배정액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한 결과, 태풍 및 장마철 집중호우 발생 시 신속한 보수가 가능했으며, 배정비율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2021년에도 현행 비율을 유지하되 집행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사전교육 실시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그 요지임

4. 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관련 입법추진 결과 보고(소관: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가. 기초보고

- 박노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관련 입법추진 결과를 보고함

나. 논의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9월에 있었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8차 회의 결정사항을 국회에서 굉장히 빨리 받아들여준 것 같음. 물론 입법이 되지 않더라도 자문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하려고 했지만 입법이 됨으로써 공식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TEXT PDF 파일은 내년 하반기부터, 민사합의 또는 민사항소 사건 미확정 판결서 시범공개는 2022년 하반기부터, 전부 공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음
- 이와 관련해서 의견 또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윤준 위원
 - 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의 시적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2023년 1월 1일 진행 중인 모든 미확정 판결이 공개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 법률 시행일 이후 선고되는 판결만 공개되는 것인지가 궁금함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개정법률안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는 ‘제1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결이 선고되는 사건의 판결서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음과 같은 이찬희 위원의 의견, 이에 대한 의장 및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이찬희 위원
 - 특허사건과 행정사건을 포함한 민사 미확정 판결서 전면 공개가 되기까지 대법원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국민들뿐만 아니라 변호사들도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음
 - 하지만 민사는 물론 형사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 미확정 판결 공개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 작업을 진행하여 2023년 민사 미확정 판결 공개 이후 형사 미확정 판결 공개도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 민사·행정·특허 미확정 판결서를 먼저 공개하여 시행경과를 지켜보고 형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여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결한 점을 고려하여 2023년 1월 1일 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후 경과를 살핀 다음 형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할 예정임



- 국회 논의과정에서 형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에 대해 별도의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는지?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이번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형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없었음
 - 하지만 판결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비실명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을 선고시점으로 앞당기는 시스템 정비가 완료되면 추가 시스템 개발 소요 없이 추가 비실명화 조치를 위한 예산만 투입하면 되기 때문에, 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후 형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에 대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면 예산 확보 및 시스템 개발을 위한 추가기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다음과 같은 허부열 위원 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허부열 위원
 - 행정, 특허사건도 민사소송법에 준해 같이 공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추진하실 계획인지?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고, 특허도 그 성격에 따라 행정소송법 또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민사 판결서가 공개되면 특허 및 행정 미확정 판결서도 같이 공개되는 결과가 됨
- 다음과 같은 최한돈 위원 및 이미경 위원 의 질문, 이에 대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최한돈 위원
 - 비실명화 조치 업무 특성상 시스템 오류 등에 의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중과실로 인정되거나 경과실과 중과실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책임보험 등 판결서 공개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여지는 없는지 여쭙고자 함
 - 이미경 위원
 - 미확정 판결서가 모두 공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판결문 작성에 대한 교육 및 관련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비실명조치가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고의는 당연히 아니겠으나 중과실로 인정돼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이런 경우를 대비한 보험 가입 문제는 정식으로 검토된 적은 없으나 이야기가 나온 적은 있고,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현재 확정판결서 비실명화 조치는 자체 비실명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외부 용역직원이 3차례에 걸쳐 비실명화 조치를 한 후, 우리 직원들이 연 50만 건 중 약 25% 정도를 샘플링하여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음. 미확정 판결서가 공개되는 경우 개인정보에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25% 샘플링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기 때문에 100% 전수조사가 가능한 예산을 확보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음. 전수조사가 가능해지는 경우 중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을 지게 되는 위험은 줄일 수 있을 것 같긴 하나 이에 더해 위험에 대비한 보험 가입 문제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판결서 작성 방식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검토된 바는 없지만 필요성은 있다고 보임.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음

○ 의장

- 미확정 판결이 공개되는 경우 법관을 비롯한 범조인은 물론 일반 국민이 판결서를 보기 시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판결서 작성 방식, 용어, 문투, 나아가 개인정보보호까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함.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준비를 하도록 하겠음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윤준 위원

- 미확정 판결 공개 이후 판결서 위변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현재 인터넷을 통한 판결서 열람시스템을 이용하여 판결서를 다운로드받고 출력을 하게 되면 출력본이라는 표시가 자동으로 이루어져 원본이나, 정본, 등본으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 아래아 한글 파일로 제공하는 경우 편집이 가능한 반면, TEXT PDF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복사와 붙여넣기 외에 편집은 안 되기 때문에 TEXT PDF 형태로 제공하는 내용으로 법률안이 통과되었음
 -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음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비실명화 조치 작업에 100%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실명화 조치 작업에 100%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임
 - 공개 기준 등에 대한 내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담당 공무원이 책임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오승이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기존 판결서에는 당사자의 승복과 설득을 위해 심지어는 관련 형사소송 내용과 같은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음. 2023년 이전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심리를 집중적으로 하되 판결서는 간단히 작성할지, 아니면 판결서에 적시된 판단의 근거가 범조인과 학생들의 교육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 방식으로 작성 하되 공개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을 확대할 것인지 등 판결서 작성 방식에 대한 연구·검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김순석 위원의 의견 및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김순석 위원
 - 미확정 판결서도 결국 비실명화 작업을 해야겠지만, 읽는 입장에서 비실명화된 판결서를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주셨으면 함. 비실명화를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내용 파악이 용이할 수 있도록 기존의 비실명화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링크를 통해 관련 1, 2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법원행정처에서 판결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비실명화 기준 변경 검토를 했



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성명뿐 아니라 여러 기재내용으로 비추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음. 성명이 나오지 않더라도 소속 직장과 직책을 통해 개인이 특정될 수 있으면 그 회사 이름과 직책을 모두 가려야 하다 보니 현재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임

- 비실명화 조치로 인해 가독성이 떨어지기는 하나 비실명화 되기 전 판결서라고 해서 바로 이해가 되지는 않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만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여 향후 판결서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조금 더 연구·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위원님들께서 판결서의 가독성에 대한 지적을 하셔서 법원행정처에 관련 검토 지시를 하였고, 지금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설명을 들은 바 있음
- 이미경 위원님과 오승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판결서 작성방식 개선은 단기간 내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판결서를 어떻게 써야할 지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리라 생각하고, 우리 역시 그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음
- 한글 표기 등 몇 가지 변화가 있긴 했지만 아시는 것처럼 현행 판결서 작성 방식이 워낙 오랜 기간 자리 잡혀 있는 상황임. 비록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5.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연구·검토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소관: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가. 기초보고

- ▣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연구·검토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함

나. 논의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는 자문회의에서 회부한 세 가지 안건, 영상재판 확대 여부 및 방안, 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 도입 문제,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



색 실무 개선방안에 대하여 각 안건별 보고서 작성 담당 주무위원을 지정하여 순차적으로 연구 검토할 계획이고, 특히 영상재판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12월 말경 설문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보고하고 있음. 관련하여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최한돈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최한돈 위원

- 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와 관련하여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림. 우리가 가장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보증금 납입부 이외에도 변제 또는 입원치료, 또는 각종 범죄예방에 대한 명령 부과 및 불이행시 제재 등 다양한 조건을 강구하여 보석 제도가 단순한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제도에 그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함

○ 의장

- 말씀하신 내용들을 주무 심의관에게 전달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의장, 배석한 형사지원심의관에게 관련 사항을 전달함

6.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연구·검토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소관: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가. 기초보고

▣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연구·검토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함

나. 논의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사법정책 분과위원회는 전문법관 확대 방안, 민사재판 제1심 단독관할 확대 방안을 순차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하고, 보고서 작성팀을 구성 후 연구·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 전문법관 확대 방안은 보고서 작성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2021년 3월경까지 설문조사를 마친 후 5월 또는 6월에 최종 연구·검토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는 것이 요지임

▣ 다음과 같은 의장의 발언 및 이에 대한 사법정책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의장



- 민사재판 1심 단독관할 확대 방안에 대한 사전자료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있었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소속 분과위원회가 의견을 낸 것이 있는데 참고가 되는 것인지?
- 사법정책심의관
 -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자료에 반영하고 있음
- ▣ 다음과 같은 이미경 위원의 질문, 이에 대한 사법정책심의관 및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이미경 위원
 - 전문법관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구체적인 분야가 궁금함
 - 본인이 신뢰관계인으로서 피해자와 동석하여 성폭력 재판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성폭력 전담 재판부 법관의 열의와 전문성이 배어난 소송지휘 태도가 피해자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을 목격한 바 있음. 이렇게 전문성을 발휘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법관으로서 1~2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함
 - 전문법관 제도를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을 지속하고 보완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지 여쭙고자 함
- 사법정책심의관
 - 현재 어떤 분야의 전문법관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형사, 의료, 건설 등 다양한 분야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어떤 분야를 우선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열릴 분과위원회에서 조금 더 논의가 진행될 예정임
 - 전문법관이 확대되어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력 1~2년으로는 부족하고 사무분담과 인사 측면에서 타 법관에 비해 길게 근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 분과위원회 간사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분과위원회 위원님들께 잘 전달하도록 하겠음
- 의장



- 특허법원 또는 가정법원과 같은 전문법원의 경우에는 특별한 교육이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전문법원이 아닌 법원에서의 전문법관제도 운영 방안이 마련되면 관련 교육은 분명히 따로 이루어질 것이고 서로 의견을 나눌 기회도 있을 것임. 이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음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 이에 대한 사법정책심의관 및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윤준 위원
 - 전문법관 확대를 위해 최종적인 입법조치가 수반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법원 내부 규정 개정으로 충분한 것인지 최종 목표 방향이 궁금함
 - 사법정책심의관
 -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사·소년 전문법관이 법률 개정 없이 인사조치 및 사무분담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의 개정까지는 필요 없이 전문법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의장
 - 전문법원과 연결이 되는 경우 법률 개정 등의 뒷받침이 필요하겠지만 전문법관만 확대하는 데에는 법률 개정은 필요 없으리라 생각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 가능성이 검토되는 분야에 따라 추가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음
- 다음과 같은 최한돈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법정책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최한돈 위원
 - 전문법관 확대 방안은 물론 민사재판 1심 단독관할 확대에 대해서도 법관들의 관심이 굉장히 큰데, 일정상 전문법관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검토가 먼저 이루어질 예정이라 2기 분과위원회 임기 안에 민사재판 1심 단독관할 확대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구·검토가 진행될 수 있는지 걱정됨. 민사재판 1심 단독관할에 대한 연구·검토도 서둘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사법정책심의관
 - 분과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전문법관 확대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첫 회의부터 민사재판 1심 단독관할 확대 방안 발제팀을 따로 구성하였고, 발제팀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내용까지 고려하여 현재 상당한 수준으로 발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전문법관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완결되면 그때까지 상당한 정도로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민사재판 1심 단독관할 확대 방안에 논의를 집중할 수 있으므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연구·검토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함
- 분과위원회 위원님들도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하고 있겠지만 분과위원회 간사로서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음

7. 법관 직무성과금 지급기준 검토 계획

가. 기초보고

- ▣ 법관 직무성과금 지급기준 검토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함

나. 논의

-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지난 9차 회의에서 원칙적으로 16호봉 이상 일반법관으로 직무성과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부 지급 기준에 대한 연구·검토 계획을 다음 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 내부적인 검토 결과 법관만으로 이루어진 직무성과금 지급 TF를 구성하되, 구성원 중 갑, 을, 병, 정 등급의 법관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정1등급과 16호봉 이상 법관은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추천을 받고, 법원행정처는 TF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실무 지원만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TF에서는 법관 직무성과금 지급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물론 16호봉 이상 법관들에 대한 직무성과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지급기준 조정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다만 2021년 4월에는 16호봉 이상 일반법관을 지급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현행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TF에서 논의한 새로운 기준은 2021년 10월 직무성과금 지급 시부터 적용되게 될 것임
-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 및 최한돈 위원의 의견, 이에 대한 의장이 답변이 있었음
 - 김진석 위원
 - 직무성과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16호봉 이상 법관이 명예퇴직을 할 때에



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해달라는 요청이 있음

- 법관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16호봉 이상이 되면 명예퇴직을 하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16호봉이 되기 전에 명예퇴직을 고민하는 분이 계셔서 말씀드림

○ 최한돈 위원

-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비슷하게 15호봉 이하 법관, 검사와는 다르게 16호봉 이상 법관에 대해서만 유달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주신 법관들이 많아 의견을 전달하고자 함

○ 의장

- 16호봉 이상 법관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인정하는 것은 평생법관제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나, 그런 의견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겠음

8. 법원공무원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및 절차

가. 기초보고

- ▣ 법원공무원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및 절차를 서면으로 보고함

나. 논의

-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이미경 위원님께서 요청하셔서 관련 자료를 마련하였음. 법원공무원의 경우 법관과는 다르게 5급 이상의 경우 성과연봉을, 6급 이하의 경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음. 관련하여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람

- ▣ 다음과 같은 이미경 위원의 의견, 의장 및 인사운영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이미경 위원

- 본인의 요청에 따라 자세하게 현황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만 보아서 알 수 없다는 점은 아쉬움
- 법원공무원의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많은 공무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상호 조율을 통해 제기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제도를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이라 생각함.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고 법원공무원의 급여나 복지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림

○ 의장

- 법원공무원의 경우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다면 관련한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약이 이루어졌을 것임.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히 방향을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음
- 혹시 법원공무원의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된 사례가 있는지? 인사운영심의관계서 답변해주시기 바람

○ 인사운영심의관

- 지금까지 노동조합 또는 개별 공무원으로부터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문제제기가 있었던 적은 없음. 성과급과 관련한 부분을 법원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공무원 전체가 동일한 기준에 의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음

○ 의장

-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 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 숫자를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12인으로 늘렸다는 점도 말씀드릴

○ 이미경 위원

- 문제 제기가 없다는 점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함. 어떤 조직에서도 제도에 관한 문제제기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상호 조율을 통해 원칙을 지키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큰 문제가 없다고 정리해버리는 경우 현존하는 문제를 보지 못하고 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릴

○ 의장

-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원의 수를 대폭 늘린 것도 그런 점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음. 지금 문제제기가 없다고 우리가 잘 하고 있다거나 앞으로도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향후 관련 사항을 계속 챙길 수 있도록 하겠음



9.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료 공개 여부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제10차 회의 자료 외부 공개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

1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 선정	비공개
2	2020년 법원시설관리 세출예산 포괄배정액 집행결과	비공개
3	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관련 입법추진 결과 보고	공개
4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연구·검토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	공개
5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연구·검토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	공개
6	법관 직무성과급 지급기준 검토 계획	비공개
7	법원공무원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급 지급 기준 및 절차	비공개

10. 비공개 또는 익명화 여부에 관한 의결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제10차 회의 회의록 작성 시 비공개 또는 익명화 할 부분이 없다고 의결함

III. 다음 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1차 회의(임시회의)

- 일시: 2021. 1. 4.(월) 15:00
■ 장소: 대법원

(끝).